

##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정책연구과제명           | IP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(ADR)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과제 담당관            | 소속(직급)  | 사법지원실(특별지원심의관) | 성 명 정현미  |
| 연구자               |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윤선희 교수)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연구기간              | 2019. 11. 7.~ 2020. 4. 6.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연구금액              | 49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계약방법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수의계약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연구결과              | ○ 우리나라에서 IP ADR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중재 제도와 조정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<br>○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ADR 현황을 민간형 IP ADR, 행정형 IP ADR, 사법형 IP ADR로 구분하여 비교<br>○ 우리나라 IP ADR 기관의 현황과 한계,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개선의 틀을 제안<br>○ 행정형 IP ADR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의 한계를 검토하여 한계 극복을 위한 사법형 IP ADR 도입의 적절성 및 단계별 도입 방향을 제시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<b>평가항목</b>       | <b>상</b>  | <b>중</b>       | <b>하</b> |
|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       | ○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내용의 완결성           | ○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구성, 체제의 적정성       | ○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참고문헌의 충실도         | ○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학술적, 실무적 가치       | ○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제출기간 준수           | ○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       | ○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      | ○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평과 결과 총평          | 별지와 같음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공개 여부    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공개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비공개 사유           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<br><input type="checkbox"/> 1호 <input type="checkbox"/> 2호 <input type="checkbox"/> 3호 <input type="checkbox"/> 4호 <input type="checkbox"/> 5호 <input type="checkbox"/> 6호 <input type="checkbox"/> 7호 <input type="checkbox"/> 8호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2020. 6. 15.     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## 평가 결과 총평

◎ 아래와 같이 본 정책연구용역은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 및 이용현황을 검토하여 각국 제도의 장·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IP 중재·조정센터 준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IP ADR의 현황 및 한계, 개선 방향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IP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(ADR) 확대방안을 제시함으로써, 향후 아시아 IP 중재·조정센터를 개원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각국 제도의 장·단점을 고려한 독자적인 제도를 고안해낼 수 있는 토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### (1) IP ADR의 의의 및 한계

#### ■ 주요 내용

- IP ADR의 필요성
- IP ADR의 순기능
- IP ADR의 한계
- IP ADR의 현황

#### ■ 수행 내용

- 지적재산권 분쟁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ADR의 필요성 및 순기능이 무엇인지 확인
-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IP ADR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중재 제도와 조정 제도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봄

### (2)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 및 이용현황

#### ■ 주요 내용

-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
- 해외 주요 ADR 기구 및 이용 현황

#### ■ 수행 내용

- 미국, EU, 영국, 독일, 중국,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의 ADR 현황 및

지적재산권 사건에 대한 ADR 활용 상황을 확인함

- WIPO 중재조정센터, ICC 국제중재법원, 홍콩 국제중재센터(HKIAC),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(SIAC), 런던 국제중재법원(LCIA), 미국중재협회/국제분쟁해결센터(AAA/ICDR), 그 외 중국과 일본에서 운영 중인 ADR 센터들의 운영 현황들을 살펴봄

### (3) 국내 IP ADR의 현황 및 한계

#### ■ 주요 내용

- 국내 IP ADR의 현황
- 국내 IP ADR의 한계
- 지식재산지적재산분쟁 조정 제도 개선에 관한 제논의들
- 지적재산권분쟁 중재 제도에 관한 개선 논의들

#### ■ 수행 내용

- IP ADR 기관의 운영 현황을 행정형, 민간형, 사법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봄
- 유형별 IP ADR 현황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, 그러한 개선 논의들의 한계점을 찾아봄

### (4) IP ADR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

#### ■ 주요 내용

- 행정형 IP ADR 활성화 방안과 한계
- 사법형 IP ADR의 확대 및 활용을 통한 IP ADR 활성화 방안

#### ■ 수행 내용

- 기존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행정형 IP ADR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개략적으로 살펴봄
- 행정형 IP ADR에 대한 개선 방향의 한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법형 IP ADR 도입의 적절성을 검토함

○ 사법형 IP ADR의 도입 방안을 3단계에 걸쳐 검토함(특허법원 조정센터 → 특허법원 중재·조정센터 → 아시아 IP 중재·조정센터)